안산시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558

발의년월일 : 2021. 1. 15.
발 의 자 : 송바우나 의원 외 4명

1. 제정이유

○ 다문화가족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,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규정 (안 제1조~제2조)

○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○ 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입법예고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1. 1. 7. ~ 1. 12. (5일간)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 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【붙임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·청소년이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다문화가족 구성원"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.
2. "다문화 아동·청소년"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3. "이중 언어 교육"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문화 아동·청소년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목표 및 기본방향
2. 이중 언어 교육과정 운영
3.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

4. 그 밖에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
제5조(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
2.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
3.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
4. 그 밖에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		안산시의회
입안자	시의원	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

안산시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558

제안년월일 : 2021년 1월 28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☐ 수정이유

○ 상위법에 따라 아동·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함.

○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수행기관에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고 다문화 아동·청소년 파악이 용이한 학교를 포함

☐ 주요골자

○ “24세 미만”을 “24세 이하”로 수정 (안 제2조제2호)

○ “단체”를 “단체·학교”로 수정 (안 제5조제2항)

의회사무국 - 정현석 - 2021-02-19 15:45:41 - ***.*.***.35

안산시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24세 미만”을 “24세 이하”로 한다.
안 제5조제2항 중 “단체”를 “단체 · 학교”로 한다.

의회사무국 - 정현석 - 2021-02-19 15:45:41 - ***.*.***.35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원안과 같음)
2. “다문화 아동·청소년”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	2.---------- 24세 이하----------.
3. (생 략)	3. (원안과 같음)
제5조(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) ① (생 략)	제5조(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) ① (원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단체·학교 ----------.

의회사무국 - 정현석 - 2021-02-19 15:45:41 - ***.*.***.35